

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

[시행 2020. 1. 13.] [경기도조례 제6460호, 2020. 1. 13., 일부개정]

경기도

□ 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·육성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경기도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제2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토종농작물"이란 「농수산물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, 농산물, 가공품을 말한다.
2. "농업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<개정 2016. 12. 16.>
3. "농업인 등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.<개정 2016. 12. 16.>

□ 제3조(도지사의 책무)

경기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경기도(이하 "도"라 한다) 내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감안하여 품종의 보존·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.

□ 제4조(토종농작물 보존·육성계획 수립 <개정 2020.01.13.>)

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토종농작물의 조사, 관리, 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
2. 토종농작물의 보존·육성을 위한 토종농작물 시범농장 지정·운영, 토종농작물 관리센터 운영 등 행정·재정적지원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□ 제5조(민관위원회 <개정 2020.01.13.>)

-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생산·공급 등의 심의·자문을 위하여 토종농작물

육성민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1.13.>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.<개정 2020.01.13.>
 1. 토종농작물의 보존·육성에 관한 사항
 2.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 [신설 2020.01.13.]

□ **제6조(토종농작물 가공·유통·판매사업의 모범사업자 선정)**

-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·육성을 위하여, 토종농작물 가공업·유통업·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모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② 도지사는 모범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1. 지역사회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
 2.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
 3.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
 4.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

□ **제7조(종농작물 보존·육성 사업의 지원)**

- ① 도지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토종농작물 보존·육성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- ②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20.01.13.]
 1. 토종농작물 생산농가의 생산 및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지원
 2. 토종농작물 생산농가의 생산안정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 지원
 3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□ **제8조(토종농작물 재배계획 등 제출)**

- ① 농업인 등은 지역 토종농작물을 보존·육성하기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사업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도지사는 시책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절차·방법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**제9조(사업정산 및 평가)**

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사업완료이후 도지사가 정

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사업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,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지속여부를 결정한다.

□ **제10조(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 등)**

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및 공공기관·각급학교 등에 소비촉진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..

□ **제11조(시행규칙)**

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<2014.10.2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) <제5405호, 2016.12.16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01.13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·운영 중인 토종농작물육성민관정책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토종농작물육성민관위원회로 본다.